

가금 사육수수 조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

농림부

■ 시스템 구축 필요성

- 그동안 닭고기 · 오리고기 소비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계열업체 중심으로 육계 및 오리 사육기반의 과잉
- 육계 및 오리는 사육기간이 짧아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건이 좋아지면 항상 과잉우려 상존
 - 따라서, 사육수수 조절의 근본이 되는 종계 · 종오리 사육수수 관리 필요

■ 원종계 종계 사육수수 관리 강화

- 대한양계협회에 종계양허관세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 닭고기 수요량에 상응한 원종계 수수만 수입추천
 - 원종계를 수입하는 때마다 계육 · 양계협회에서 업체별 쿼터물량대로 수입여부 현지 조사

실시

- 2004년도 원종계 사육수수를 2003년 수준(9만4천수)으로 유지
 - * 원종계 과잉사육으로 육계수수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종계쿼터제 실시 합의(2003. 12, 계육협회 · 양계협회 · 정부)
- 원종계 사육수수 감축(2003.11) : (당초) 15만6천수 → (조정) 9만4천수($\Delta 62$)
- 과잉 종계 사육수수 감축으로 5월 이후 가격안정 기대 가능
 - 종계도태 물량 : 53만2천수(전체 종계수의 12% 수준, 1. 27일 도태 개시)

■ 원종오리 · 종오리 관리 강화 및 사육수수 관리

〈문제점〉

- 현재 오리는 HS 분류상 일반오리와 종오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, 종오리업은 신고 또는 등록대

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

- 종오리를 인정하기 위한 일반능력 능력검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종오리의 범위 설정에 한계
 - 알을 낳는 오리 모두가 종오리로 간주되고 있음.

〈대 책〉

- HS분류상 오리를 종오리와 일반오리로 분류(재 경부에 요청)
 - 닭은 종계와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나, 오리는 185g 이하, 기타로 구분하여 종오리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 대두
 - 종오리에 대하여는 TRQ 품목에 포함하여 관리(DDA초안에 반영)
- 종오리에 대한 일반능력 검정 실시
 - 종오리업이 축산법상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이전 까지는 한국오리협회에서 일반능력 검정 실시
- 종축업 등록대상에 종오리 및 원종오리 포함하도록 축산법시행령 개정
 - 2005년부터 종오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생산된 오리알은 부화금지
- 한국오리협회 주관으로 원종오리 종오리에 대한 자율쿼터제 실시
 - 화인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원종오리 수수를 국내 수요량에 맞는 물량만 수입토록 오리농가간 합의추진(2004. 2)
 - 원종오리에서 분양된 종오리에서 생산된 종란만을 부화토록 부화장 관리강화

■ 강제환우 금지 법제화

- 원종계 쿼터제 도입에 따른 닭 과잉사육 억제의

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강제환우 근절

- 종계관련협의회 주관으로 강제환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징구(2004. 2)
- 질병 발생예방과 가금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강제환우 금지를 법제화 추진
 - 농가·관련 협회와 공청회를 개최(5월)하여 의견수렴후 축산법 개정 추진
 - 축산법 개정전까지 경제연령을 초과한 종계에 대한 강제환우 여부를 현지조사 실시(계육협회와 양계협회 상호 조사)
 - 강제환우 농가는 지상공개 및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패널티 강구(농가에 사전홍보 실시)

■ 가금류 정확한 수급예측을 위한 D/B 구축

- 육용종계의 주령별 사육수수와 병아리 부화실적을 주기적으로 현지 조사후 D/B화하여 농가에게 공표
 - 종계업 및 부화업의 등록제 실시와 연계하여 정확한 수급예측 가능
- * 원종계 농가에서 종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계업 등록여부와 등록규모 물량을 확인하고 공급토록 관리강화
- 도계실적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다른 통계자료와 연계, 정확성 제고
 - (당초) 닭 → (조정) 육계·산란계·육용종계·산란종계·겸용종·삼계
- * 2003실적(1~11) : 4억5천9백만수(육계 367, 삼계 77, 산란계 14) ○